

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

의안 번호	520
----------	-----

제의연월일 : 2024. 2. 27.

제 의 자 : 경상북도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-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여 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

연번	소속위원회	의원명	비고
1	교육	정한석	
2	교육	조용진	

3. 관계법령 발취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4조
- 「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54조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84조(회의록)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□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

- 제54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,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 사무처장이 서명·날인 한다.
-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. 다만, 회의록의 영구 보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.